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충청남도 시·군 소방서 공유재산취득 미확보 등 업무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충청남도 소방본부(○○○○과)에서는 천안시 ○○소방서 등 총 15개 시·군에 소방서(붙임1)를 건축하여 지역 소방서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축 중인 예산, 청양 등의 경우 부지 확보가 지연되자 우선 무상사용을 상호협의를 하고 이후 등가교환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로·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소방서 건축사업을 2012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면서, 건축물 부지(토지)가 태안군 소유로써 즉시 공사착공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상호협의를 하고, 이 후 건물 준공을 완료하고 등가교환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충청남도 소유로 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받아 착공을 하였다.

이후 건축물 등 사업이 준공되자 2017. 10. 충청남도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을 득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면서 사업추진 당시 6억원 상당이던 토지의 지가가 26억원 상당으로 급상승하였음에도 등가교환 의견을 제출하자, 심의회에서는 사업추진에 토지 미확보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의견 제시로 부결처리 되었다.

이에 관련 공유재산 관리 부서인 ○○○○과에서는 의회 부결을 사유로 부지 매입 방법 등 대책 수립 없이 업무를 종결처리 하는 등 공유재산취득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충청남도 15개 시·군 소방서 현황(붙임1)에 따르면 지역 소방서 중 6개 소방서의 부지 소유권은 시·군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 소유권은 충청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등 소유권이 불일치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과와 소관 부서인 ○○○○과에서는 예산 미확보 등을 사유로 개선대책 마련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통보] 소방서 건축물과 부지 소유권이 불일치되어 있는 5개 시·군 소방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서 부지 매입 및 준공현황

(2017. 10. 31.기준)

소방서명	부지					건축물			
	소유자	면적 (㎡)	도 소유부지 매입		비고	소유자	연면적 (㎡)	건축(준공) 연도	비고
			연도	방법					
천안○○	천안시	3,793			무상사용	천안시	3,000.26	1993	무상 사용
천안○○	충청남도	6,042	2009	매입		충청남도	3,760.40	2011	
공주	충청남도	7,568	2013	등가 교환	도↔공주시	충청남도	3,589.00	2016	
보령	충청남도	9,447	2010	등가 교환	도↔ 충남개발공사	충청남도	3,519.72	공사 중	
아산	충청남도	6,750	2015	등가 교환	도↔아산시	충청남도	3,650.77	공사 중	
서산	충청남도	5,783	2009	등가 교환	도↔서산시	충청남도	2,935	1990	
논산	충청남도	4,950	1993	매입		충청남도	3,132.36	1997	
당진	당진시	9,056			무상사용	충청남도	2,619	2005	
금산	금산군	3,695			무상사용	금산군	2,058	2001	무상 사용
부여	충청남도	5,933	2012	매입		충청남도	2,825.44	2007	
서천	충청남도	5,322	1936	매입		충청남도	2,709	2005	
홍성	충청남도	9,579	2008	등가 교환	도↔홍성군	충청남도	3,304	2005	
예산	충청남도	5,600	1939	매입		충청남도	935.42	2017	
						예산군	1,427.33	1979	무상 사용
태안	태안군	10,582			무상사용	충청남도	3,522.46	2015	추진중
청양	청양군	8,015			무상사용	충청남도	3,426	2017	추진중